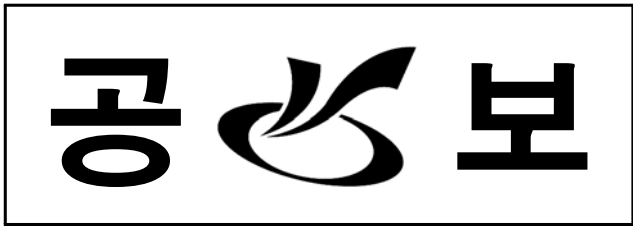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58호
2008년 9월 29일 월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04호 공시송달공고 1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06호 공시송달공고 20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8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2008년도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하수 이용부담금 신설부과에 따른 특별회계 운영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수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안 제11조의2)
- 지하수이용부담금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
 - 부과·징수 방법
 - 부과 대상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등
- 제명 띄어쓰기등 표준화된 우리말 규정에 맞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0.13(월)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건설과 Fax 032-560-448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설과 치수관리팀 (☎) 032-560-453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자치법규 일부 개정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의 재원조성을 위한 2008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라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하수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안 제11조의1) ○ 지하수이용부담금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제3항) ○ 제명 띄어쓰기 등 표준화된 우리말 규정에 맞도록 정비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산·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체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관련사업 계획	지하수특별회계 설치
예 산 수 반 사 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0 지하수조례 제정관련 실무자 회의 개최 [물관리과-5767(2006.04.21)] 0 인천광역시 군·구 지하수조례 표준안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물관리과-5767(2006.04.21)]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하면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

- 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로 한다.
-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1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총무국장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3. 경리관 : 총무국장
 4.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채권관리관 : 건설과장
 6. 채무관리관 : 건설과장
 7. 지출원 : 경리담당
 8.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담당
 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 담당자
 10.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
-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4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개발·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전산용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로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17조(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200 년 월 일

진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시 행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원(W○○○○)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채 납 과 태 료 금 액	금 (₩	원)	당초납부 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00○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 행 :

수 신 :

발 신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illegible]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804호

검단3 도시개발구역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29-1번지 일원의 토지소유자가 우리구로 제안한 (가칭)검단3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고자,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공람 ·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서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공람 ·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항

가.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1) 구역명칭 : (가칭)검단3 도시개발구역
-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29-1번지 일원
- 3) 면 적 : 524,004㎡
- 4)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5)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1) 시행예정자 : 토지소유자[(가칭)검단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2) 시 행 방 식 : 환지방식

2.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관한 사항

가. 사 업 명 : (가칭)검단3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29-1번지 일원

- 다. 사업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 마. 설명회 장소 및 일시 : 설명회 생략(공람으로 대체)

3.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3)
- 다. 의견제출 방법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806호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시행하는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하였으나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2008년 9월 2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보상협의대상 물건 내역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보상금액 (원)
					성명	주소	
인천 서구 공촌동	283-2	전	137	137	이용민		50,279,000
"	283-3	"	236	236	이용민		86,612,000
"	282-2	"	50	50	이철주		18,000,000
"	282-3	"	27	27	이철주		9,720,000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협의 계약 전까지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이 있기 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 가능

- 지장물

소재지	지번	종류	수량	소유자		보상금액 (원)
				성명	주소	
인천 서구 공촌동	283-3	관정	1식	이철주		1,000,000
"	283-3	철대문	1식	이철주		200,000
"	283-2 283-3	철조망	1식	이철주		155,000
"	283-2 283-3	콘크리트포장	1식	이철주		1,500,000

2. 보상협의 및 계약기간 : 2008.09.25 ~ 2008.10.09 (15일)

3. 협의 및 계약체결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244)
서구청 본관4층(건설과 건설행정팀) ☎ 032-560-4487

4.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 산정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토지소유자 추천 가능, 단 해당 요건 충족시)
- 보상 방법 : 본인과의 대면 협의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계좌입금

5. 보상협의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 단 세입자 및 물건 등 보상자는 1부(일반용)
(토지주는 부동산매도용 1부 :매수자는 “인천광역시 서구” /일반용 1부)
-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임야)대장 각 필지별 1부(토지 소유자 해당)
-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 포함)
- 지참물 : 인감도장, 예금통장, 신분증